

#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994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대상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의 결 일 2023. 12. 18.

### 주 문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18일

위원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중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 지>

---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A H R C

# ❑ 목 차 ❑

|                                      |   |
|--------------------------------------|---|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 1 |
| II. 현황 .....                         | 2 |
| III. 문제점 .....                       | 4 |
| 1. 지자체 공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례 빈발 .....      | 4 |
| 2.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공용차 운행 만연 .....      | 5 |
| 3. 지자체 공용차량 정기검사 해태 .....            | 6 |
| IV. 개선방안 .....                       | 7 |
| 1. 재발 방지를 위한 공용차 관리업무방식 개선 .....     | 7 |
| 2.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 .... | 7 |
| V. 조치사항 .....                        | 8 |
| [붙임] 관련 법령 .....                     | 9 |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 추진 배경

-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 실시가 의무
    -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
  - 정기 검사는 차량 운행의 적정성 등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기 이행이 필수
- 그러나, 지자체 공용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관용차량 무보험 운행 “아찔”(21. 10월 언론기사)
  - 의무보험 미가입 32일 동안 무법 차량 상태 운행
- ○○지역 공용차량, 무보험에 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22. 2월 언론기사)
  - 공용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다수

⇒ 이에,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고 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

## □ 추진 경과

- 제도 운영 실태조사\* : ’23. 3월~10월
  - \* 대상기관 :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20개, 지자체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기관 의견조치 : ~’23.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3. 12월

## II. 현황

### □ 지자체 공용차량 보유 현황

- 지자체 공용차량은 총 47,698대이고, 이 중 광역 지자체가 7,425대를, 기초 지자체가 40,273대를 보유

<지자체 공용차량 보유 현황('23. 3월 기준)>

| 광역     | 기초      |
|--------|---------|
| 7,425대 | 40,273대 |

### □ 공용차량 관리체계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소재 20개 중앙행정기관은 총량 관리와 운행관리를 단일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원화** 체계

※ (총량관리) 구매, 정수관리 등, (운행관리) 운행, 정기점사 등

- (지자체) 총량 관리는 총괄부서가, 운행관리는 사업부서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

<지자체 차량 관리체계>

| 총괄부서                |
|---------------------|
| ·차량 총량 등 정수 관리      |
| ·차량 배정(총괄부서 → 사업부서) |

| 사업부서                    |
|-------------------------|
| ·배정받은 차량 운행             |
| ·운행 관리(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 |

### □ 관련 법령

- (의무보험)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같은 법 제51조(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 부과로 갈음



○ (정기검사)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기 검사에는 차량의 동력 장치, 주행 장치, 조종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등 주행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모두 포함

<차량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구분    |        |             |               |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u>2년</u><br>[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u>2년</u>                                                                                 |
|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u>1년</u>                                                                                 |
|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u>1년</u><br>(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u>6개월</u>                                                                                |



### Ⅲ. 문제점

#### 1 지자체 공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례 빈발

- (광역) 최근 4년('19년~'22년) 간 17개 광역 지자체의 82.3%인 14개 지자체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받음
  - 14개 광역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89건\*, 부과총액은 약 5백만 원
  - \* 89건 중 8건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30일을 초과
- (기초) 조사 대상 202개\* 기초 지자체의 68.3%인 138개 지자체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받음
  - \*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자료 미제출 기관 24개 제외
  - 138개 기초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826건\*, 부과총액은 약 4천만 원
  - \* 826건 중 63건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30일을 초과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세종시 소재 20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기관 없음

<권익위 실태조사 : 기관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현황>

| 구분    | 중앙행정기관     |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
| 조사 대상 | 20개        | 17개            | 202개            |
| 위반 기관 | 0개<br>(0%) | 14개<br>(82.3%) | 138개<br>(68.3%) |
| 부과 건수 | 0건         | 89건            | 826건            |
| 부과총액  | 0원         | 약 5백만 원        | 약 4천만 원         |

※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부과된 과태료 내역



## 2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공용차 운행 만연

- (광역) 최근 4년('19년~'22년) 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광역 지자체 14개 중 92.8%인 13개 지자체가 미가입 상태로 공용차 운행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된 차량은 약 30대, 이들 차량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약 2백일

<광역 지자체 무보험 운행 주요 사례>

| 시·도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무보험 운행 일수 |
|-----|------------------------------------|-----------|
| A도  | 2019. 05. 08. ~ 2019. 05. 28.(21일) | 21일       |
| B도  | 2019. 03. 23. ~ 2019. 04. 22.(31일) | 19일       |
| C도  | 2021. 10. 03. ~ 2021. 11. 15.(44일) | 18일       |
| D시  | 2019. 05. 24. ~ 2019. 06. 19.(27일) | 17일       |
| E시  | 2020. 10. 29. ~ 2020. 11. 18.(21일) | 16일       |

- (기초)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기초 지자체 138개 중 69.6%인 96개 지자체가 미가입 상태로 공용차 운행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된 차량은 약 300대, 이들 차량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약 2천일

<기초 지자체 무보험 운행 주요 사례>

| 시·군·구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일수)                    | 무보험 운행 일수 |
|-------|------------------------------------|-----------|
| A구    | 2019. 07. 10. ~ 2019. 10. 06.(89일) | 54일       |
| B군    | 2022. 07. 31. ~ 2022. 09. 26.(58일) | 38일       |
| C구    | 2020. 01. 25. ~ 2020. 03. 11.(46일) | 34일       |
| D시    | 2020. 02. 17. ~ 2020. 03. 19.(31일) | 28일       |
| E시    | 2021. 02. 01. ~ 2021. 03. 23.(51일) | 25일       |
| F군    | 2020. 04. 26. ~ 2020. 06. 10.(46일) | 23일       |
| G시    | 2022. 02. 02. ~ 2022. 02. 27.(26일) | 23일       |
| H시    | 2020. 11. 17. ~ 2020. 12. 22.(36일) | 23일       |
| J시    | 2022. 01. 11. ~ 2022. 02. 14.(35일) | 22일       |



### 3 지자체 공용차량 정기 검사 해태

- (광역) 최근 4년('19년~'22년) 간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받음
  -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55건, 부과총액은 약 1천 4백만 원
- (기초) 조사 대상 202개\* 기초 지자체의 82.7%인 167개 지자체가 공용차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받음
  - \*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자료 미제출 기관 24개 제외
  - 167개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794건, 부과총액은 약 1억 원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세종시 소재 20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공용차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기관 없음

<권익위 실태조사 : 기관별 공용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현황>

| 구분    | 중앙행정기관     |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
| 조사 대상 | 20개        | 17개           | 202개            |
| 위반 기관 | 0개<br>(0%) | 17개<br>(100%) | 167개<br>(82.7%) |
| 부과 건수 | 0건         | 355건          | 2,794건          |
| 부과총액  | 0원         | 약 1천 4백만 원    | 약 1억 원          |

※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부과된 과태료 내역

## IV. 개선방안

### 1 재발 방지를 위한 공용차 관리업무방식 개선

- (1안) 의무보험 및 정기 검사 관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총괄부서로 일원화

| 구분   | 현행                                       | 개선                                                   |
|------|------------------------------------------|------------------------------------------------------|
| 총괄부서 | ·차량 총량 관리<br>·차량 배정 등                    | ·차량 총량 관리<br>·차량 배정 등<br>· <u>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u> |
| 사업부서 | ·차량 운행·관리<br>· <u>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u> | ·차량 운행·관리                                            |

- (2안) 사업부서별 관리는 유지하되, 총괄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실태점검 체계 마련

⇒ 2가지 개선방안 중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개선사항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

### 2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

- 공용차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

⇒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를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



##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구분                                   |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조치기한        |
|--------------------------------------|--------------------------------------------------------------------------------------------------------------------------------------------------------------------------------------------------------|--------|-------------|
| ① 재발 방지를 위한<br>공용차 관리업무방식<br>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총괄부서로 일원화</li> <li>사업부서별 관리는 유지하되, 총괄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 마련</li> </ul> <p>⇒ 2가지 개선방안 중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개선사항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p> | 지방자치단체 | '24. 6. 30. |
| ② 의무보험 보장 기간<br>및 정기검사 실시일<br>게시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차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li> </ul> <p>⇒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를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p>                                  |        |             |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칙금액표>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br>화물자동차 100<br>특수자동차 100<br>건설기계 100<br>승용자동차 100 |
|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 승합자동차 50<br>화물자동차 50<br>특수자동차 50<br>건설기계 50<br>승용자동차 40      |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3항 제1호 |                                                                                 |
| 2) 비사업용 자동차<br>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br>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 법 제48조제3항 제1호 | 1만원<br><br>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2.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                                       |
|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 4만원                                   |
|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 60만원                                  |

정 본 입 니 다 .

2023. 12. 19.

국 민 권 의 위 원 회



A C R C